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0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오영환·김남국·최혜영

이탄희 · 이재정 · 김홍걸

정청래 · 홍정민 · 김민철

권인숙 · 임호선 · 장경태

의원(12인)

제안이유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뒤 2018년 1월 26일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또한, 같은 해 11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 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자율 안전관리의식 정착,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 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 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 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방청장등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나.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10조제3항·제10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5항 후단 신설).
- 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화재 시 해당 업소 이용자가 신속 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 조의3 신설).
- 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 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의2제1항).
- 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 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 향 함(안 제23조·제25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방향 피난계단"이란 다중이용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주계단 이외에 1개 이상의 계단을 통해 곧바로 지상 또는 피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 ③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 유지·관리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하며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행위
- 2.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에 장애물을 설치(두는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 위
- 4. 그 밖의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양방향 피난계단 확보)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피난계단을 갖출 수 없는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다중이용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중이용업주 및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를 "다중이용업주"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한다"를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며, 같

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5항 중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을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중이용업주에게"를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반업소"를 "소방특별조사 결과"로 한다.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4. 법령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 5. 화재발생 이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 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잠 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의2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6호를 다음과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비상구를 훼손·변경 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
-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양방향 피난계단"이란 다중
	이용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건
	축물에서 주계단 이외에 1개
	이상의 계단을 통해 곧바로
	지상 또는 피난공간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
	업·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 따라 휴업·폐업 등에 관</u>
	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법률 제1736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저기준 등) ① (생 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u>허가관청에</u>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 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HE METORS TO TO HE T
반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세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2
허가관청에
<u> 영업정지 처분</u>
<u>이 경우 요청을</u>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
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u>한다.</u>
③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
라 설치된 비상구 유지·관리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
하며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③ (생략)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 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

2.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
<u>위</u>
3.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에
장애물을 설치(두는 것을 포
함한다)하거나 「소방기본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의 비상구를 훼손하거
 나 변경하는 행위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 </u>
제4항제1호
<u>⑥</u>
제4항제3호

한	경우에	는	시정될	때 :	까지	안
전/	시설등	완1	비증명사	를	발급	상하
여/	서는 아	·니	된다.			

<u>⑥</u>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저 ①·② (생 략)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 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의3(양방향 피난계단 확보)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
를 위하여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피난계단을 갖출 수 없는 건축
물에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피난사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u>허가관</u> <u>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u> 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ㅈ ·② (생 략)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 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u>허가관청에 관계</u>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있다. <후단 신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

허가관
청에 영업정지 처분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
정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
야 한다 <u>.</u>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허가관청에 영업</u>
<u>정지 처분</u>
<u>이 경우 요청을</u>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업정
지나 허가등의 취소를 하여야
<u>한다.</u>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 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화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
<u>L</u>
—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손해
배상책임 등) ① 다중이용업
주
<u></u>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u> </u>
금액의 범위에서 그
<u>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 <u>이</u>

가입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 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 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 률」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 주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 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2항-----⑤ 제4항-----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 입 촉진 및 관리) ① ~ ④ (생 입 촉진 및 관리) ① ~ ④ (현

행과 같음)

략)

-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5)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u>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u> 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 7 재위험평가 등) ① (생 략)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u>다중이용업주에게</u>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

5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
는 허가등의 취소를
<u>이 경우 요</u>
<u>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u>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영
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
재위험평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u>다중이용업주</u>
<u>또는 관계인에게</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 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 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 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 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 소
 -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 리 현황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4. 법령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5. 화재발생 이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2	소방특별2	<u> </u>
<u>사</u>	결과	_
		_

ll 23조(벌칙) <u>①</u>	
	•

1. 제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 설>

1. • 2. (생략)

<신 설>

제25조(과태료) <신 설>

- 비상구를 폐쇄(잠금을 포함한 다)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 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제4호 까지를 위반하여 비상구를 훼 손·변경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 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 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 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 3의2. (생 략)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
 의 행위를 한 자
- 5. (생략)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을 훼손·변경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
<u>②</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9조제4항</u>
2의3. ~ 3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

니하였거나 점검기록을 허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 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 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다.

② ~ ⑦ (생 략)

위로 작성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 지 아니한 자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제26조(이행강제금) ① ------2천만원-----

② ~ ⑦ (현행과 같음)